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398 발의연월일: 2021. 7. 8.

발 의 자: 박대수 · 김선교 · 이종배

박덕흠 • 김성원 • 김정재

박성민 · 지성호 · 김희곤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징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 징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부의무의 승계, 공동사업자의 연대납부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고용 ·산재보험료 등의 납부·징수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무한책임사원, 과점주주 등 법인을 운영하는 자에게 일정부분 보험료 납부의무를 지우고, 사업 양도로 인한 탈법을 막기 위해 양수인의 책임도 보충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

아울러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대상 체납 금액 및 체납금액을 하향 조정하여 인적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보험료의 적극적인 납부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 터 계약대금 수령 시에 보험료 완납사실을 증명하게 하여, 체납보험료 의 자진납부를 유도함으로써 간접징수 효과를 높이고 보험재정의 안 정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에 도입된 제2차 납부의무 규정과 보험료 납부증명 규정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장수 등에 관한 법률」에 마련하고 인적사항 공개 대상고액·상습 체납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보험료 장수 업무 통일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5, 제28조의 6, 제29조의4 등).

법률 제 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8의 제목 "(월별보험료의 고지)"를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22조의5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납부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①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료일(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에게 부과 결정된 보험료(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우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업주가"를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로, "사업주에게"를 "납부의무자에게"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을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을"로 하고, "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을"을 "해당 보험료등을"로 한다.

제28조의6제1항 본문 중 "2년"을 "1년"으로, "10억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①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공사·제조·구매 ·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는 경우 제1항의 계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 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2차 납부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제17조 및 제19조 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따른 신고기한이 이 법 시행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대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의8(월별보험료의 고지) ①	제16조의8(보험료등의 납입 고지)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건강보험공단은 제22조의5
	에 따른 제2차 납부의무자에게
	납부의무가 발생한 경우 납입
	의 고지를 하여야 하며, 원납부
	의무자인 법인인 사업주 및 사
	업양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의
	고지 방법, 고지의 도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
	까지를 준용한다.
⑤ (생략)	<u>⑥</u> (현행 제5항과 같음)
<u><신 설></u>	제22조의5(제2차 납부의무) ① 법
	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
	하여야 하는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
	분비를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
	우에는 해당 법인이 납부하여
	야 하는 보험료의 납부기간 만
	료일(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
	정에 따른 납부기간 만료일을

말한다) 현재의 무한책임사원 또는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다만, 과점주 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 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 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 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 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② 사업이 양도·양수된 경우 에 양도일 <u>이전에 양도인에게</u> 부과 결정된 보험료(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신고된 보험료 를 포함한다),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 및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수 인이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부의무를 진다. 이 경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 공단은 사업주가 잘못 낸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보험료등과 제21조의2에 따른 환수금(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에 우선 충당하고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그 사업주에게 반환결정하고, 건강보험공단이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제17조, 제19조 및 제26조의 개산보험료, 확정보험료 및 징수금에 따른 나머지 금액은 공단이 지급한다.

- 1. ~ 6. (생략)
- ② ~ ④ (생 략)
- ⑥ ~ ⑧ (생 략)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저 ① (생 략)

②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가입자
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
지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

<u>우 양수인의 범위 및 양수한</u>
재산의 가액은 대통령령으로
<u> 정한다.</u>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 ①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u>납부의무자에게</u>
<u>,</u>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징수금의 통지 및 독촉)
① (현행과 같음)
② 납부의무자
<u>가 보험료등을</u>
<u>해당 보험료등을</u>

역 <u>그 납부의무자에게 징수금</u> 을 낼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③ • ④ (생 략)

제28조의6(고액·상습 체납자의 저 인적사항 공개) ① 건강보험공 단은 이 법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이 지난 보험 료와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 수금과 체납처분비(제29조에 따라 결손처분한 보험료, 이 법 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 납처분비로서 징수권 소멸시효 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 한다)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 항 및 체납액 등(이하 이 조에 서 "인적사항등"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과 체납처분비와 관련하 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그 밖에 체납 된 금액의 일부납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⑤ (생 략)

,
③·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6(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①
<u>1년</u>
5천만원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 ① 보험료등의 납부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 <u>터 공사·제조·구</u>매·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의 대가를 지급받으려면 보험료등 의 완납(完納) 사실을 증명하여 야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계약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로 보험료등을 납부하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납부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보험료등의 완납 사실을 증명 하여야 하는 경우 제1항의 계 약을 담당하는 주무관서 또는 공공기관 등은 납부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여 보험료등의 납부 여 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제1항에 따른 완납 사실 증명을 갈음할 수 있다.